

코웨이 주식회사

기업지배구조 헌장

제정 2025.11.06

전문

코웨이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한다)는 'The Best Life Solution Company'라는 비전 아래 혁신적인 제품과 케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,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을 목표로 합니다.

우리는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이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임을 인식하고, 모든 경영활동의 원칙으로 삼고자 본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합니다.

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가치를 증대시키며, 고객, 임직원, 파트너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제1장 주주

제1조 (주주의 권리)

- 주주는 이익배당 참여권, 주주총회의 참석권 및 의결권,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.
- 합병, 정관의 변경,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과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.
-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2조 (주주의 공평한 대우)

-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,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.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정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,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정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.

제3조 (주주의 책임)

-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기업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4조 (이사회 의 기능)

- ① 이사회는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기능과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. 다만, 법령·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.

제5조 (이사회 의 구성 및 이사 선임)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3명 이상 9명 이하의 이사를 두고, 그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이사회 의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로 선임한다.
- ③ 이사는 성별, 연령, 국적, 인종, 종교, 교육수준, 장애 여부 등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, 기업 가치의 향상 및 주주권익 제고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④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,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.
- ⑤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.
- ⑥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.

제6조 (이사회 운영)

- ① 이사회는 매 분기별로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.
- ③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내용을 유지·보관한다.
-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 현황과 이사회 의결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.

제7조 (이사회 내 위원회)

- ① 이사회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조직,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한다.
- ③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제8조 (이사의 의무)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사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, 항상 기업과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9조 (이사의 책임)

-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 이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.
- ② 이사가 충분한 검토와 적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,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10조 (사외이사)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,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,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.
- ④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·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 (평가 및 보상)

-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, 그 평가 결과는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
- ②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한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12조 (감사위원회)

-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여야 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한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관련 법령, 정관, 감사위원회 규정 등에 명문화하여 정해진 회계와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다.
-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감사부서 및 외부감사인 등 관계자가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.

제13조 (외부감사인)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,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.

-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대상 재무제표와 함께 정기적으로 공시되는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- ④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⑤ 외부감사인은 『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』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⑥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14조 (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)

- ① 회사는 고객, 주주 및 투자자, 임직원, 파트너사,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.
- ②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한다.
- ③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제5장 공시

제15조 (공시)

-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,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.